운송사 대상 출입국 요건 안내서

미합중국

여행 관련 필수 서류

2014년 5월

Korea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목차

서문

미합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 거주자, 방문객 등의 여부를 막론하고 신분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여행객은 본인의 여행 목적에 적합한 서류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합중국 법에 따르면 출입국 시 교통편을 제공하는 운송사 역시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승객을 미국에 입국시킨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출입국 관련 안내는 여행업계 종사자를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필수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송사 직원들은 본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출입국 관련 서류 확인 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서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려면 운송사 연락 프로그램 이메일 주소인 *CLP@dhs.gov* 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운송사 연락소 전화번호인 1 (571)468-1650로 문의해 주십시오.

CBP에서는 지역 운송사 연락 그룹(RCLG)을 개설하여 여행 필수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문의사항 및 그 외 미국 입국과 관련된 해외 운송사의 문의사항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CLG에서는 여행자가 제출하는 여행 서류의 유효성 또는 출입국 가능 여부와 관련된 운송사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합니다. 서류의 유효성 및 출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RCLG에서는 해당 승객에 대한 탑승 허가 또는 거부 여부에 대해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최종 결정은 운송사에서 내려야 합니다. 지역 운송사 연락 그룹은 마이애미, 뉴욕 및 호놀룰루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번호로 탑승 장소를 관할하는 RCLG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내에서 이민 연락관 프로그램(IAP) 또는 공동 보안 프로그램(JSP)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IAP 또는 JSP 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CLG는 연중 무휴 24시간 체제로 운영됩니다. 본 서비스는 전 세계의 미국행 항공편 운송사에게 제공됩니다.

RCLG	서비스 지역	전화 번호
호놀룰루	아시아, 환태평양	1-808-237-4632
마이애미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1-305-874-5444
뉴욕	유럽, 아프리카, 중동	1-718-553-1783

또한, 운송사 직원은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www.cbp.gov*) 및 미 국무부, 영사업무부(*www.travel.state.gov*) 등의 두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소식 및 일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운송사 대상 출입국 요건 안내서는 미국 국토 안보국,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현장 운영실, 운송사 연락 프로그램의 간행물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음으로 보내 주십시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Field Operations
Carrier Liaison Program, Carrier Information Guide
12825 Worldgate Drive 6th Floor
Mailstop 1340
Herndon, VA 20598-1340, USA
전화: 1 (571)468-1650
팩스: 1 (571)468-1773
이메일: *CLP@dhs.gov*

제1부:

미국 입국 시 필수 서류

I. 항공편 이용 시

서반구 여행 정책(WHTI)에 따라 미국 국민을 포함하여 북/남미, 카리브해 지역, 버뮤다 출입국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여권 또는 소지자의 신분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승인된 서류가 있어야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여행 서류는 유효해야 하며 만기가 지나서는 안 됩니다.

A. 미국 국민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미국 여권
- NEXUS 카드(NEXUS 지정 장소에서만 해당)
- 미국 정부 발행 여행 증명서

특수 신분의 미국 국민:

1. **현역 복무 중인 미국 국적 군인**은 공식 출장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이 있을 경우 미국 여권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2. 미국 국적의 **외항 선원**은 미국 국민임이 명시된 외항 선원증을 소지한 경우 여권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3. 미국 국민으로 **미국 본토**, 영지 및 관할지를 이동하는 경우, 하지만 미국 외 항구 또는 장소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여권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미국 영지 및 관할지는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스완섬, 북마리아나 제도를 말합니다.

B. 미국 거주자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카드(양식 I-551)
- 유효기간 연장이 명시된 통지서（양식 I-797）가 첨부된 만료된 조건부 거주자 카드（양식 I-551）
- 이민 비자 및 여권
- 여권 또는 양식 I-94의 임시 거주 스탬프(“ADIT”)
- 재입국 허가(양식 I-327)
- 난민 여행 증명(양식 I-571)
- 여행 승인서(양식 I-512)
- 미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행 증명서/링컨 보딩 포일(Lincoln Boarding Foil)

예외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해외 출생 자녀 합법적인 영주권자 외국인이거나 미국인인 어머니가 일시적인 해외 방문 중에 출산한 자녀이며 해당 자녀의 미국 입국 신청이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최초 귀국 시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을 신청하는 부모와 동반한 경우 탑승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민 비자가 발급된 후 미국에 이민자로 처음 입국하기 전인 **동반 부모의 해외 출생 자녀**는 여권이 있거나 부모의 여권에 등재되어 있고 출생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외국인이 공식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C. 방문객/환승 승객 -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및 비자(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이 아닌 경우)

비자 면제 방문자:

캐나다 국민

- 여권 필수.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제4부 참조) 비자 면제.

버뮤다 거주민

- 여권 필수.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하고(제4부 참조) 비자 면제.

멕시코 국민

- 여권 및 비자 또는
- 여권 및 국경 통과 카드(BCC)

멕시코 외교관(및 동반 가족)으로 외교관 또는 공직자 여권이 있으며, 미국 영구 발령자가 아닌 경우, 비자나 국경 통과 카드가 없이도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교관 본인 없이 가족만 여행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내 NATO 연합군 사령부 소속으로 공식 명령서와 NATO 신분증이 있는 **NATO 직원**은 여권 및 비자가 면제됩니다.

바하마 국민 또는 바하마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바하마 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이 승객의 미국 입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탑승 전에 해당 승객을 검사한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승객이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에서 바로 입국하며 법원에서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으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만 바로 여행하는 경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VI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대상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여행객: 지정된 특정 국가 국민들은 비즈니스 또는 여행 목적의 단기 방문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및 괌-북마리아나 제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G-CNMI)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15~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I. 육상/해상 교통편 이용 시*

* 서반구에서 출발하는 선박편을 이용한 입국 시. 동반구에서 출발하는 선박편을 이용한 입국 시에는 I절 "항공편 이용 시"의 서류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9페이지의 서반구 여행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A. 미국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 여행자 증명 카드(NEXUS, SENTRI, FAST 또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
-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상급 운전 면허증

특수 신분의 미국 국민:

- **현역 복무 중인 미국 국적 군인은** 공식 출장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이 있을 경우 미국 여권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 **미국 국적의 외항 선원은** 미국 국민임이 명시된 미국 외항 선원증이 있을 경우 미국 여권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민으로 **미국 본토, 영지 및 관할지를** 이동하는 경우, 하지만 미국 외 항구 또는 장소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여권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미국 영지 및 관할지는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스완섬, 북마리아나 제도를 말합니다.
- 상급 부족 카드(35페이지 참조)
- 사진이 부착된 미국 원주민 신분증

B. 미국 거주자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 카드(양식 I-551)
- 유효기간 연장이 명시된 통지서（양식 I-797）가 첨부된 만료된 조건부 거주자 카드（양식 I-551）
- 이민 비자 및 여권
- 여권 또는 양식 I-94의 임시 거주 스탬프 (“ADIT”)
- 재입국 허가(양식 I-327)
- 난민 여행 증명(양식 I-571)
- 여행 승인서(양식 I-512)
- 미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행 증명서/링컨 보딩 포일(Lincoln Boarding Foil)

예외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해외 출생 자녀 합법적인 영주권자 외국인인 어머니가 일시적인 해외 방문 중에 출산한 자녀이며 해당 자녀의 미국 입국 신청이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최초 귀국 시 영주권자로서 재입국을 신청하는 부모와 동반한 경우 탑승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민 비자가 발급된 후 미국에 이민자로 처음 입국하기 전인 **동반 부모의 해외 출생 자녀**는 여권이 있거나 부모의 여권에 등재되어 있고 출생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 복부 중인 외국인이 공식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C. 방문객/환승 승객 -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및 비자(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이 아닌 경우)

비자 면제 방문자

캐나다 국민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하고(제4부 참조) 비자 면제
- 캐나다 국적 증명서
- NEXUS, FAST, SENTRI
- 원주민 북부 지역 발전 카드
-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상급 운전 면허증

버뮤다 거주민
- 여권 필수. E, K 및 V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되는 예외를 제외하고(제4부 참조) 비자 면제.

멕시코 국민
- 여권 및 비자 또는 국경 통과 카드(육상 이동)
- 여권 및 비자 또는 여권 및 국경 통과 카드 (선박편 이용)

멕시코 외교관(및 동반 가족)으로 외교관 또는 공직자 여권이 있으며, 미국 영구 발령자가 아닌 경우, 비자나 국경 통과 카드가 없이도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교관 본인 **없이** 가족만 여행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내 NATO 연합군 사령부 소속으로 공식 명령서와 NATO 신분증이 있는 **NATO 직원**은 여권 및 비자가 면제됩니다.

바하마 국민 또는 바하마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바하마 내 CBP가 승객의 미국 입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탑승 전에 해당 승객을 검사한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승객이 케이맨 제도 또는 터크스 케이코스 제도에서 바로 입국하며 법원에서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으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만 바로 여행하는 경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VI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대상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여행객: 지정된 특정 국가 국민들은 비즈니스 또는 여행 목적의 단기 방문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및 괌-북마리아나 제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G-CNMI)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15~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II. 기타 사항

A.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는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동하려는 특정 국가의 국민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6 페이지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VWP 적용 국가에서 발급했으며 기계 판독식 여권(MPR)을 소지한 경우
- 2005년 10월 25일 이후 발급한 여권으로 디지털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 2006년 10월 25일 이후 발급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경우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 사업, 관광 또는 환승 승객으로 90일 이내의 임시 방문인 경우
- 계약 운송사의 항공 또는 해상 교통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 승인된 ESTA 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 귀국편/연결편 항공권/선박권 소지
- 여행자가 미국의 주변 관할지역 또는 인접 섬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여행이 해당 지역이나 섬에서 종료될 수 없음

**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ESTA)은 VWP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행 항공/선박편에 탑승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웹 기반 시스템입니다. 38개 국가의 국민들은 ESTA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ST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esta.cbp.dhs.gov에서 확인하십시오.

비자 면제 프로그램 - 적용 국가

그리스[4]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3,5]
대한민국[3]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3]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3]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타[3]
벨기에
브루나이
산 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3]
슬로베니아[1]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3]
영국[2]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3]
칠레[3]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3]
호주

비자 면제 프로그램(계속)

1. 슬로베니아 국민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적색 표지의 슬로베니아 여권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영국 여권을 제시하는 사람이VWP 이용 자격을 갖추려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채널 제도 및 맨 섬의 영구 거주에 있어 제한없는 권리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3. 이 10개 국가 국민들은 반드시 전자여권(표지의 ICAO 로고로 식별)을 제시해야 합니다.

VWP 국가의 임시 및 긴급 여권은 전자여권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VWP 국가의 임시 및 긴급 여권이 전자여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VWP에 따른 미국 입국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임시 및 긴급 여권(Kinderpass)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근거한 미국 입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cbp.gov/contact에서 확인하십시오.

4. 2006년 8월 26일 현재 Hellenic Police에서 발급한 그리스 전자여권만VWP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69페이지 참조).

5. 개인 식별 번호가 명시된 대만 *e-PP*만이 *VWP* 적용을 받습니다(69페이지 참조).

B. 괌-북마리아나 제도(G-CNMI) 비자 면제 프로그램

GCVWP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 비자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 G-CNMI VWP 계약 운송사의 여행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
- 행선지가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로 한정된 경우
- 사업 및 단순 여행 목적의 방문객으로 45일 이내 단기 방문인 경우
- 출국일이 입국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왕복 여행권을 소지한 경우
- 양식 I-736 및 양식 I-94을 작성 및 서명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적용 대상 국가의 국민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기계 판독식 여권을 소지한 경우:

나우루	말레이시아	일본
뉴질랜드	브루나이	파푸아 뉴기니
대만**	싱가포르	호주
대한민국	영국	홍콩*

*"영국 재외 국민"이라고 표시된 영국 여권을 소지한 이전의 영국 식민지인 홍콩의 시민이나 특별행정지역 (SAR) 여행 서류를 소지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여행 서류는 반드시 홍콩 신분증을 동반해야 합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대만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 여행 시작지가 대만이고 대만에서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CNMI)로 직항편을 이용하는 경우.
2) 대만의 국민 신분증과 대만의 외무부에서 발급한 재입국 허가가 포함된 유효한 대만 여권을 소지한 경우.

C.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CNMI)를 방문하는 러시아 국민의 일시적 입국 허가

2011년 11월 15일, 미국 국토 안보국장은 재량에 따른 일시적 입국 허가 권한에 따라 러시아 국민이 괌으로 여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결정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CNMI)로의 여행을 위한 일시적인 입국이 허용됩니다.

- 외국의 탑승항으로부터 G-CNMI VWP의 계약 운송사를 통해 괌 및/또는 북마리아나 제도 (CNMI)로 직접 여행하는 경우.
- 괌 및/또는 북마리아나 제도(CNMI) 내 체류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괌/북마리아나 제도(CNMI)로 여행하는 러시아 국민은 괌과 북마리아나 제도(CNMI) 사이를 여행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45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환불 및 양도 불가능하며 괌 또는 북마리아나 제도(CNMI) 입국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출국일이 확정된 왕복 여행권을 소지한 경우.
- 괌-북마리아나 제도(CNMI) 비자 면제 정보 양식 (CBP 양식 I-736)을 작성 및 서명하고 소지한 경우.
- 작성 완료한 출입국 카드인 CBP 양식 I-94를 소지한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았으며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의 규정을 준수한 기계 판독식 여권을 소지한 경우.
- 사업 또는 단순 여행 목적의 방문객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시적 입국 허가는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CNMI)로 한정되며 미국 내 기타 지역으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본 권한으로 여행하는 방문객은 현지에서 채용되거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D. 특정 국가 여권의 유효성

6개월 규칙

미국 입국자들은 미국 내의 예정된 체류 기간보다 6개월 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아래 국가의 국민은 이 6개월 규칙에서 면제되며, 체류 예정 기간만큼 유효한 여권만 필요합니다.

가봉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모든 여권 해당)
대만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카오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나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디브
몰타
몽고
바베이도스
바티칸(교황청)
바하마
버마
버뮤다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산 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셀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안도라
안티구아 바부다
알제리
앙골라
앤틸리스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짐바브웨
체코
칠레
카타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태국
터키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신분증 및 여권)

E. 인근 섬 목록

과들루프
그레나다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마르티니크
마리 갈랑트
몬세라트
미클롱
바베이도스
바부다
바하마
버뮤다
보네르
사바
세인트 마틴
세인트 바르텔레미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피에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루바
아이티
안티구아
앙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자메이카
케이맨 제도
쿠바 *
큐라소
터크스카이코스 제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 쿠바는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항상 인접 도서국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우 인접 도서국에서 제외됩니다.

F. 자동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그리고 동반 배우자 및/또는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탑승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체류한 경우
- 최초 입국 또는 연장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명시한 승인된 양식 I-94를 소지한 경우
- 여권을 소지한 경우
- 해외 체류 중 신규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방문자 신분을 변경했거나 동일한 방문자 신분을 유지한 경우(22 CFR 41.112(d))

F와 J 분류의 비자를 소지한 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비자 자동 재허가를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근 섬/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쿠바 제외)
-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미국을 벗어나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근 섬에서 체류한 경우
- F-1용 양식 I-20 또는 J-1용 양식 DS-2019 등의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 최초 입국 또는 연장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을 명시한 승인된 양식 I-94를 소지한 경우
- 여권을 소지한 경우
- 해외 체류 중 신규 미국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방문자 신분을 변경했거나 동일한 방문자 신분을 유지한 경우(22 CFR 41.112(d))

2013년 5월 14일부터 CBP에서는 항공 및 선박편 입국장에서 I-94를 자동화하였습니다.
종이 또는 전자 양식의 출력본 모두 재허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비자 재허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G. 전자 양식 I-94

CBP에서는 이제 전자 양식 I-94를 항공 및 해상 여행 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항공 및 선박 여행객은 종이로 된 I-94를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94는 도착 시 *www.cbp.gov/I9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94를 웹사이트에서 출력하면 종이로 된 I-94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I-94 Admission Number Retrieval — Page 1 of 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dmission (I-94) Number Retrieval

Admit Until Date (MM/DD/YYYY): 10/10/2012

Details provided on Admission(I-94) form:

Family Name:	Li
First (Given) Name:	Lydia
Passport Country of Issuance:	Mexico
Date of Entry (MM/DD/YYYY):	04/11/2012

6/27/2012

제2부:

항공편 출국 관련 필수 서류

II. 항공편 출국 시

서반구 여행 정책(WHTI)에 따라 미국 국민을 포함하여 북/남미, 카리브해 지역, 버뮤다 출입국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여권 또는 소지자의 신분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승인된 서류가 있어야 미국 입국 또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여행 서류는 유효해야 하며 만기가 지나서는 안 됩니다.

A. 미국 국민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미국 여권
- NEXUS 카드(NEXUS 지정 장소에서만 해당)
- 미국 정부 발행 여행 증명서

예외:

1. **현역 복무 중인 미국 국적 군인**은 공식 출장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이 있을 경우 미국 여권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2. **미국 국적의 외항 선원은** 미국 국민임이 명시된 미국 외항 선원증이 있을 경우 미국 여권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국민으로 **미국 본토**, 영지 및 관할지를 이동하는 경우, 하지만 미국 외 항구 또는 장소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여권 없이 탑승 가능합니다. 필수 서류 영지 및 관할지는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스완섬, 북마리아나 제도를 말합니다.

B. 미국 거주자 -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 영주권자 카드(양식 I-551)
- 여권 또는 I-94의 임시 거주 스탬프(“ADIT”)
- 재입국 허가(양식 I-327)
- 난민 여행 증명(양식 I-571)
- 미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외국인이 소지한 공식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

C. 방문객 –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예외:

긴급 여행 증명: 긴급 여행 증명은 여행 증명 소지자의 귀국을 위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내로 짧으며 입국 회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 여행 증명은 일반적인 여권 책자 또는 외국 영사관의 레터헤드가 인쇄된 1장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신분증, 신분증, 영사관 증명서, 시민증, 귀화 증명 또는 기타 민간 신분증이나 인구 동태 조사표 등은 여행 증명이 **아니므로** 이러한 서류의 소지자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추방 명령: 추방 명령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승객을 미국에서 출국, 퇴출 또는 추방시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추방 명령의 양식은 다양하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발급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은 일회 여행증입니다.

참고: 목적지 국가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회 여행증

제3부:

미국 여행 서류 예시

제3부: 미국 여행 서류

제3부

미국 여권

전자여권

미국 전자여권은 서류 앞 표지에 국제 전자여권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여권 소지자의 생체 인식 식별자와 함께 개인 신상 기록 페이지에 명시된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이 여권에 부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6년 판

미국 여권

미국은 검정 표지의 외교관 여권, 갈색 표지의 공무원 여권, 그리고 청색 표지의 개인 여권을 발급합니다.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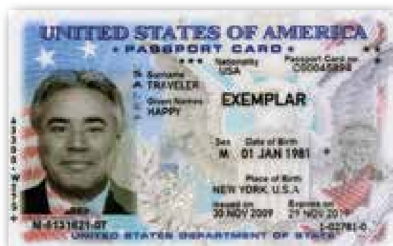
긴급 여권

제3부

미국 여권 카드

여권 카드는 캐나다, 멕시코, 버뮤다 및 대부분의 카리브해 지역에서 육상 또는 해상 교통 수단으로만 미국에 입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유효한 일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권 카드는 정규 책자형 여권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여권 카드는 모든 육로 국경 및 항구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WHTI 인증 서류입니다.





NEXUS 카드

NEXUS 카드는 지정된 NEXUS 키오스크가 설치된 공항에서 미국 및 캐나다 국민이 사용하는 유효한 입국 서류입니다.



참고: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와 캐나다 영주권자는 NEXUS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민 신분 및 국적에 따른 필수 입국 서류는 소지해야 합니다.

군인 신분증

현역으로 미군에 복무 중인 여행자는 공식 출장 명령서와 군인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여권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REQUEST AND AUTHORIZATION FOR TDY TRAVEL OF DOD PERSONNEL
(Reference: Joint Travel Regulations (JTR), Chapter 3)
(Read Privacy Act Statement on back before completing form.)

1. DATE OF REQUEST *(YYYYMMDD)*

REQUEST FOR OFFICIAL TRAVEL

2. NAME *(Last, First, Middle Initial)*
3. SOCIAL SECURITY NUMBER
4. POSITION TITLE AND GRADE/RATING
5. LOCATION OF PERMANENT DUTY STATION (PDS)
6. ORGANIZATIONAL ELEMENT
7. DUTY PHONE NUMBER *(Include Area Code)*
8. TYPE OF ORDERS
9. TDY PURPOSE *(See JTR, Appendix H)*
10a. APPROX. NO. OF TDY DAYS *(Including travel time)*
b. PROCEED DATE *(YYYYMMDD)*
11. ITINERARY — VARIATION AUTHORIZED
12. TRANSPORTATION MODE

a. COMMERCIAL				b. GOVERNMENT			c. LOCAL TRANSPORTATION			
RAIL	AIR	BUS	SHIP	AIR	VEHICLE	SHIP	CAR RENTAL	TAXI	OTHER	PRIVATELY OWNED CONVEYANCE *(Check one)* RATE PER MILE:

AS DETERMINED BY APPROPRIATE TRANSPORTATION OFFICER *(Overseas Travel only)*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MILEAGE REIMBURSEMENT AND PER DIEM IS LIMITED TO CONSTRUCTIVE COST OF COMMON CARRIER TRANSPORTATION AND PER DIEM AS DETERMINED AND TRAVEL TIME AS LIMITED PER JTR

13. a. PER DIEM AUTHORIZED IN ACCORDANCE WITH JTR. b. OTHER RATE OF PER DIEM *(Specify)*

14. ESTIMATED COST				15. ADVANCE AUTHORIZED
a. PER DIEM $	b. TRAVEL $	c. OTHER $	d. TOTAL $ 0.00	$

16. REMARKS *(Use this space for special requirements, leave, excess baggage, accommodations, registration fees, etc.)*
17. TRAVEL-REQUESTING OFFICIAL *(Title and signature)*
18. TRAVEL-APPROVING/DIRECTING OFFICIAL *(Title and signature)*

AUTHORIZATION

19. ACCOUNTING CITATION
20. AUTHORIZING/ORDER-ISSUING OFFICIAL *(Title and signature)*
21. DATE ISSUED *(YYYYMMDD)*
22. TRAVEL ORDER NUMBER

DD FORM 1610, JAN 2001 PREVIOUS EDITION IS OBSOLETE. Reset

PRIVACY ACT STATEMENT
(5 U.S.C. 552a)

AUTHORITY: 5 U.S.C. 5701, 5702, and E.O. 9397.

PRINCIPAL PURPOSE(S): Used for reviewing, approving, and accounting for official travel.

ROUTINE USE(S): None.

DISCLOSURE: Voluntary; however, failure to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may delay or preclude timely authorization of your travel request.

16. REMARKS *(Continued) (Use this space for special requirements, leave, excess baggage, accommodations, registration fees, etc.)*

DD FORM 1610 (BACK), JAN 2001 Reset

군 명령서양식 *DD-1610*

참고: 일부 유효한 군 출장 명령서는 양식 DD 1610에 없습니다.

미국 외항 선원증

미국 외항 선원증은 소지자가 미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미국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tizenship: UNITED STATES

Expires
02/03/2016

글로벌 엔트리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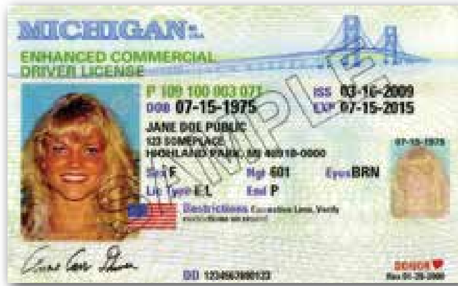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 받은 여행자는 미국 입국 시 보다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Expiration Date/Date d'expiration/Expira el
04 JUL 1781



글로벌 엔트리 카드

상급 운전 면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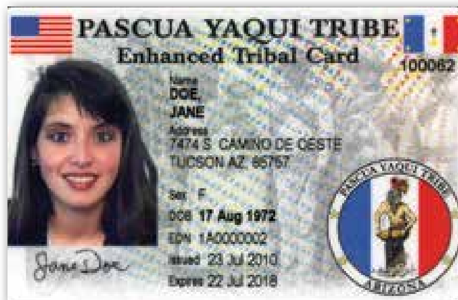


SENTRI 카드

SENTRI 프로그램은 남쪽 국경 입국 지역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정된 여행자를 위한 빠른 심사 시스템입니다.



상급 부족 카드



상급 운전 면허증과 상급 부족 카드는 미국 국적 및 신분 증빙입니다. 이 서류는 WHTI의 여러 여행 규정 준수를 위해 여러 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캐나다 또는 멕시코와의 지상 국경을 통과할 경우 이 카드들을 여권 대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카드

합법적 영주권자(LPR)는 영주권자 카드(양식 I-551)를 소지할 경우 미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만료된 I-551 양식을 소지한 합법적 영주권자(LPR)는 해당 카드가 10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경우 벌금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DHS 2010년 판



DHS 2004년 판

영주권자 카드(계속)



DOJ 1997년 판





1977년 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행 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유효 영주권자 카드는 본 안내서에 명시된 것입니다. 본 안내서에 명시된 영주권자 카드를 승객이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전에 RCLG 담당자를 통해 카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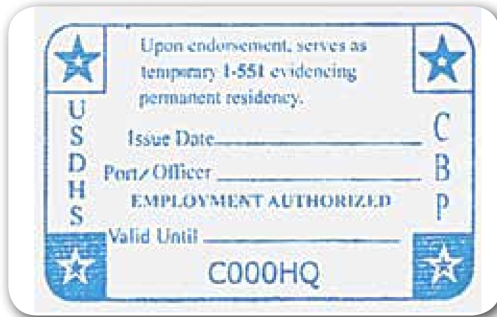
조치 통지서

기간이 만료된 거주자 카드(2년 만기)를 소지한 조건부 거주자는 조치 통지서 (양식 I-797)를 소지하고 있으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조치 통지서는 이 카드의 유효기간을 일정 기간, 대체로 1년간 연장해 줍니다. 이 양식의 "수령일"은 카드의 유효기간과 무관합니다. 여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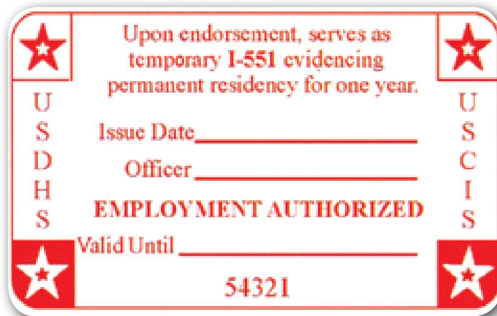
참고: 양식 I-797의 외관과 기재 내용은 양식을 발급한 미국 이민국의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식 I-797에 대해 잘 모를 경우 탑승 전에 RCLG에 문의하십시오.

ADIT 스탬프

합법적 영주권자(LPR)는 유효한 외국인 서류 확인 및 통신(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 스탬프가 있으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ADIT 스탬프는 거주자 신분의 임시적 증명으로 합법적 영주권자에게 제공됩니다 ADIT 스탬프는 여권 또는 양식 I-94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CBP 판



USCIS 판

이민 비자

이민 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하며 이민자의 여권 안쪽에 부착됩니다.

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이민 비자는 입국 확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재입국 서류가 됩니다. **"UPON ENDORSE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입국 확인 후 1년간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임시 I-551 양식으로 사용됨)와 같은 내용이 기계 판독 구역 바로 위의 비자 본문에 인쇄됩니다. 이 서류는 여행 및 취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ADIT 스탬프 대용입니다.

승인



재입국 허가

합법적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없이 재입국 허가(양식 I-327)를 소지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제시하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것일 수 있습니다.



2007년 판

난민 여행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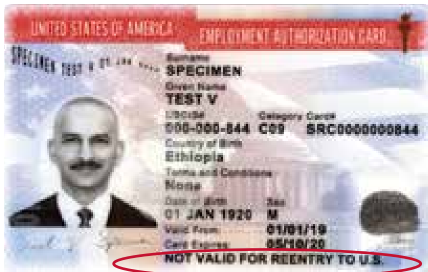
난민 여행 증명(양식 I-571)은 미국 출입국 시에 유효한 서류입니다.

2005년 판

취업 허가증(EAD)

취업 허가증(양식 I-766)은 미국의 합법적 임시 거주자나 특정 비이민자에게 발급되어 그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료되지 않은 EAD 카드의 앞면에 "미국 재입국에 유효함(VALID FOR RE-ENTRY TO THE U.S.)"이라 명시된 경우, 운송사는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 서류와 함께 이 취업 허가증을 제시하는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 참고: 모든 EAD가 여행에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 전면에 "미국 재입국에 유효하지 않음(NOT VALID FOR RE-ENTRY)"이라 명시된 경우라도 이 안내서에 명시된 유효한 미국 입국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에서는 해당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습니다



NOT VALID FOR REENTRY TO U.S.

Card Expires: 05/10/20



VALID FOR REENTRY TO U.S.

취업 허가증

"콤보 카드"(양식 I-766)는 임시 입국 허가(45페이지, 양식 I-512)와 미국 내 취업 허가가 결합된 것입니다. 만료되지 않은 EAD 카드의 앞면에 "I-512 임시 입국 허가용으로 사용됨(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 표시된 경우, 운송사는 이 서류와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을 함께 제시하는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제3부

임시 입국 허가

임시 입국 허가(양식 I-512)를 소지한 여행자는 미국 입국 또는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서류의 만료일 전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임시 입국 허가서에 어떤 스탬프가 찍히더라도 인쇄된 일자를 연장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UTHORIZATION FOR PAROLE OF AN ALIEN INTO THE UNITED STATES

Name of Alien: (First)	(Middle)	(Last)	Date: 10/1/2014
JANE		DOE	File Number: 111111111

Date of Birth: (Month) (Day) (Year)	Place of Birth: (City or Town)(State or Province) (Country)
10/1/1975	UNITED KINGDOM

U.S. Address: (Apt. Number and/or in Care of) (Number and Street)	(City or Town)	(State)	(ZIP Code)
11 ANY STREET	ANY TOWN	NY	11111

Presentation of the attached duplicate of this document will authorize a transportation line to accept the named bearer on board fo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liability under Section 273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bringing an alien who does not have a visa.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of this document prior to **September 16, 2015** will authorize an Immigration Officer at a port of entry in the United States to permit the named bearer, whose photograph appears hereon, to enter the United States:

X as an alien paroled pursuant to Section 212(d)(5)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UTHORIZATION: The holder of this authorization is an applicant for adjustment of status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e holder departed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and intends to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processing of the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Contingent upon his or her prima facie eligibility, the holder of this document shall be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authority of ANDREA J. QUARANTILLO, District Director, NYC.
VALID FOR MULTIPLE APPLICATIONS FOR PAROLE INTO THE UNITED STATES.

NOTICE TO APPLICANT: Presentation of this authorization will permit you to resume your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upon you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If your adjustment application is denied, you will be subject to removal proceedings under Section 235(b)(1) or 240 of the Act. If, after April 1, 1997, you were un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180 days before applying for adjustment of status, you may be found inadmissible under Section 212(a)(9)(B)(i) of the Act when you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the processing of your application. If you are found inadmissible, you will need to qualify for a waiver of inadmissibility in order for you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to be approved.

(Signature of Immigration Officer)

New York, District Office
Authorizing Office / CP

ARRIVAL STAMP

Form I-512 (Rev. 03-01-02)Y

TO ALIEN

참고: 양식 I-512의 외관과 기재 내용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부

여행 증명서

여행 증명서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미국 국민, 합법적 영주권자 또는 난민에게 발급합니다. 이 여행/통행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소지자는 여행 증명서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merican Embassy Cairo, Egyp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UTHORIZATION TO TRANSPORT ALIEN TO THE UNITED STATES

Date Issued: **May, 29, 2015**
This Document Valid Until: **June, 27, 2015**
Document Number: [illegible]
Name of Bearer: [illegible]
Date/Place of birth: [illegible]
Permanent Resident Card Number: # [illegible]
Passport Number/Country: [illegible]

TO: Transportation Company

Presentation of this document will authorize a transportation company to accept the named bearer, whose photograph is attached, on board fo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liability under Section 273(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transporting an alien without a visa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vent of evidence of tampering with this letter or with the copy of this letter directed to the CBP Officer or with the envelopes in which these letters are conveyed, the transportation company is requested not to board the person named above and to report the evidence of tampering to this office at **CBP CAIRO OFFICE NUMBER** [illegible] or after normal business hours to call the Embassy Duty Officer via the Embassy switch board at **EMBASSY CAIRO DUTY OFFICER CELL NUMBER** [illegible]

TO: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at Port of Entry

The bearer of this document, who appears to b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in possession of an Alien Registration Card (I-551) for the stated reason that it was reported lost while temporaril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his document was issued to allow the bearer to board a carrier and make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his letter in no way constitutes an obligation 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admit the alien. The CBP Officer at the Port of Entry has sole and exclusive authority to admit the above named alien. A copy of this letter has been retained by this office along with the bearer's declaration as to his/her claimed status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Issued by:

Ibtisam Amer, CBP Attaché

Telephone:

CBP CAIRO OFFICE NUMBER [illegible]

Photograph

참고: 외관과 기재 내용은 발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미국 국무부, 이민 및 세관 집행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이민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링컨 보딩 포일(Lincoln Boarding Foil)

링컨 보딩 포일은 미국 국무부에서 난민, 망명자 및 가석방자에게 발행합니다. 링컨 보딩 포일은 여권에 부착하는데, 여권이 없는 경우 미국 국무부 양식 DS-232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링컨 보딩 포일의 "Annotation" 란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본 서류는 비자가 아니며 DHS의 요청에 따라 발급됨. 서류로 소지자가 탑승해도 운송사는 책임이 없음(NOT A VISA. FOIL PREPARED AT DHS REQUEST. MAY BE BOARDED WITHOUT TRANSPORTATION CARRIER LIABILITY)". 또한, "ZZ", "YY" 또는 "PARCIS" 비자로 분류됩니다.





링컨 방문 비자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 미국 방문자는 모두 각 여행 목적에 따른 링컨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링컨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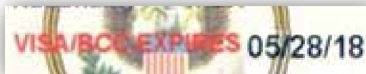
참고: 2013년 10월 1일부로 미국 국무부에서는 테슬린 비자(Teslin visa) 승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링컨 비자만이 유일하게 승인을 받는 비자입니다. 테슬린 비자를 발견할 시 탑승 전에 RCLG에 문의하십시오. 테슬린 비자는 73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경 통과 카드

국경 통과 카드(BCC)는 미국 국무부에서 발급하며,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로 B1/B2 여행자 비자와 국경 통과 카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국경 통과 카드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멕시코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발급됩니다.









제3부

UN 통행 허가증(Laissez - Passer)

UN 통행증은 클래스 “G4” 미국 비자가 부착되어 있으면 미국 입국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여행 서류입니다.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LAISSEZ-PASSER





제4부:

비자 분류

제4부

제4부: 비자 분류

A-1	공무원 및 직계 가족
A-2	공무원 및 직계 가족
A-3	A-1 또는 A-2의 직원
B-1	사업상 임시 방문자
B-2	단순 여행 목적의 임시 방문자
C-1	미국을 통과하는 환승객
C-1/D	환승 및 승무원 통합 비자
C-2	UN 방문
C-3	미국 통과 환승을 이용하는 공무원, 직계 가족/직원
CW-1	북마리아나 제도 내 임시 근로자
CW-2	CW-1의 배우자 또는 자녀
D-1	도착 시와 동일한 교통편으로 출국하는 승무원
D-2	도착 시와 다른 교통편으로 출국하는 승무원
E-1	무역업 종사자, 그 배우자 및 자녀
E-2	무역업 투자자, 그 배우자 및 자녀
E-2C	북마리아나 제도 내 투자자, 그 배우자 및 자녀
E-3	호주 국적 특수직 종사자
E-3D	E-3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R	귀국하는 E-3
F-1	학생
F-2	F-1의 배우자 또는 자녀
F-3	캐나다 또는 멕시코 통근 학생
G-1	국제기구 대표 및 직원
G-2	국제기구 대표 및 직원
G-3	국제기구에 파견된 대표 및 임직원
G-4	국제기구에 파견된 대표 및 임직원
G-5	G 1-4의 직원 또는 직계 가족
H-1B	특수직 종사자
H-1B1	칠레 및 싱가포르 국적의 자유 무역 전문가
H-1C	간호사
H-2A	임시 농업 근로자
H-2B	숙련/비숙련 임시 농업 근로자
H-2R	귀국하는 H2-B
H-3	산업 연수생
H-4	H-1 - H-3의 배우자 또는 자녀
I	외국 언론인 및 직계 가족
J-1	교환 방문자
J-2	J-1의 배우자 또는 자녀
K-1	미국 국적자의 약혼자(녀)
K-2	K-1의 자녀
K-3	미국 국적자의 배우자
K-4	K-3의 배우자
L-1	사내 전근자
L-1B	특수 지식 소유 기업 내 전근자
L-2	L-1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학교 학생 또는 비학위 취득 학생
M-2	M-1의 배우자 또는 자녀
M-3	캐나다 또는 멕시코 통근 학생

N-8	특수 이민자로 분류된 외국 국적자의 부모
N-9	N-8 또는 특수 이민자의 자녀
NATO-1	대표 및 가족
NATO-2	대표 및 가족
NATO-3	대표 및 가족
NATO-4	대표 및 가족
NATO-5	NATO 1-4의 직원
NATO-6	NATO 1-4의 직원
NATO-7	NATO 1-6의 직원 또는 직계 가족
O-1	비범한 능력 보유자
O-2	O-1의 동반자/조수
O-3	O-1 - O-2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	개인 또는 단체 운동선수, 연예 그룹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 및 연예인
P-3	문화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 및 연예인
P-4	P-1 - P-3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	국제 문화 교류
Q-2	아일랜드 평화문화연수조약
Q-3	Q-1 - Q-2의 배우자 또는 자녀
R-1	종교 근로자
R-2	R-1의 배우자 또는 자녀
S	특수 비이민자
T	특수 비이민자
U	특수 비이민자
TN	캐나다 및 멕시코 무역 비자(NAFTA)
TD	TN의 배우자 또는 자녀
V-1	합법적 영주권자(LPR)의 배우자
V-2	V-1의 파생 자녀
V-3	V-1 또는 V-2의 파생 자녀
YY	여행 증명서 대신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ZZ	여행 증명서 대신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
PARCIS	미국 이민국 국제 운영부 임시 입국 허가

제5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정 위반 행위 일람표

제5부: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벌금 부과 조항

아래 표에는 INA에 따라 CBP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NA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INA 조항	상황	벌금 (최고액)
234	항공기 도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거나 항공기를 비인가 장소에 착륙한 경우.	$3,200
243(c)	명령에 따라 승객을 내리지 않은 경우 [참조 241(d)(3)].	$3,200
	명령에 따라 승객을 내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참조 241(e)].	$2,200
	명령에 따라 승객을 다시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참조 241(d)(1)].	$2,200
	밀항자를 조사 때까지 억류하지 않은 경우 [참조 241(d)(2)].	$2,200
	명령에 따라 밀항자를 내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참조 241(e)].	$2,200
	밀항자를 내리지 않은 경우 [참조 241(d)(2)(C)].	$5,500
251(b)	불법적으로 착륙한 외국인 승무원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20
251(d)	외국인 승무원이 허가 받지 않은 항만 작업을 수행한 경우 [참조 258].	$7,500
254(a)(1)	외국인 승무원을 조사 전에 억류하지 않은 경우.	$4,300
254(a)(2)	명령에 따라 외국인 승무원을 억류하지 않은 경우.	$4,300
254(a)(3)	명령에 따라 외국인 승무원을 내리지 않은 경우.	$4,300
255	특정 곤란을 겪고 있는 승무원을 여객선에 고용한 경우.	$1,100
256	외국인 승무원을 부당하게 하선시킨 경우.	$4,300
257	CBP 법을 회피할 의도로 외국인을 승무원으로 미국에 데려온 경우.	$16,000
271	외국인의 무허가 착륙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4,300
272	건강 관련 이유로 인해 탑승 거부 대상인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	$4,300

INA 조항	상황	벌금 (최고액)
273(a)(1)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효한 입국 서류가 없는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	$4,300
273(a)(2)	외국인을 탑승시키는 조건으로 수수료, 예치금 또는 대가를 받은 경우.	$4,300
	2004년 10월 26일 이후 유효한 기계 판독식 여권(MRP) 없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외국인을 데려온 경우.	$4,300
	2005년 10월 26일 이후 기계 판독식 여권(MRP)에 디지털 사진이 없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외국인을 데려온 경우.	$4,300
	2005년 10울 26일 이후 생체 인식 칩이 내장된 기계 판독식 여권(MRP)에 디지털 사진이 없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외국인을 데려온 경우.	$4,300
	ESTA의 승인 없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외국인을 데려온 경우.	$4,300

제5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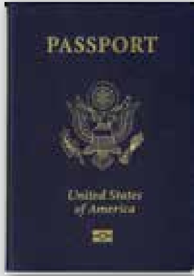
제5부

제6부:

신속한 여행 서류 참조 차트

항공편 입국 시 필수 서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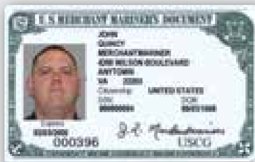
미국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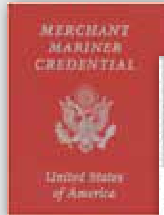


미국 여권



군인 신분증
(공식 출장 명령서 포함)







외항 선원증



NEXUS 카드
(Nexus 키오스크에서만 사용 가능)

제6부



미국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계속).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merican Embassy [ENTER Offic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UTHORIZATION TO TRANSPORT ALIEN TO THE UNITED STATES

Date Issued:
This Document Valid Until:
Document Number:

Name of Bearer:
Date/Place of birth:
Permanent Resident Card Number:
Passport Number:

TO: Transportation Company

Presentation of this document will authorize a transportation company to accept the named bearer, whose photograph is attached, on board fo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liability under Section 273(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or this single trip unless otherwise noted. In the event of evidence of tampering with this letter or with the copy of this letter directed to the CBP Officer or with the envelopes in which these letters are conveyed, the transportation company is requested not to board the person named above and to report the evidence of tampering to this office at (insert tel. number) or after normal business hours to call the Embassy Duty Officer at: (insert tel. number).

TO: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 at Port of Entry

The bearer of this document, who appears to b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in possession of a Alien Registration Card (I-551) for the stated reason that it was reported (insert what applies e.g., Lost, Stolen, Expired, Mutilated) while temporarily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his document was issued to allow the bearer to board a carrier and make application f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his letter in no way constitutes an obligation 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admit the alien. CBP at the port of entry has sole and exclusive authority to admit the above named alien. A copy of this letter has been retained by this office along with the bearer's sworn affidavit as to his/her claimed status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Issued by:

____

Telephone:

____

Photo

여행 증명서

VISA

링컨 보딩 포일*(Lincoln Boarding Foil)*

항공편 입국 시 필수 서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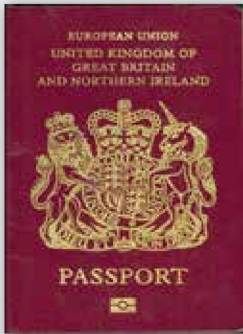
캐나다 및 버뮤다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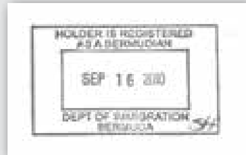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영국 여권 안쪽에 있는 이 스탬프는 버뮤다 국적을 나타냅니다



임시 입국 허가서



NEXUS 카드
(Nexus 키오스크에서만 사용 가능)

항공편 입국 시 필수 서류 요건

멕시코 국민은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및 비자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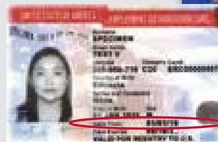


여권 및 국경 통과 카드

또는



임시 입국 허가서



Valid From: 01/01/19

여권 및 만료되지 않은 EAD

항공편 입국 시 필수 서류 요건

합법적 영주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ADIT 스탬프



DHS 여행 서류



이민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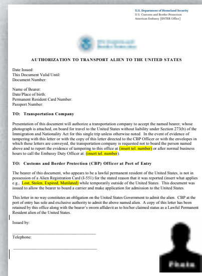
임시 입국 허가서



영주권자 카드



링컨 보딩 포일(Lincoln Boarding Foil)


AUTHORIZATION TO TRANSPORT ALIEN TO THE UNITED STATES

여행 증명서

항공편 입국 시 필수 서류 요건

VWP 적용 여행자는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VWP 적용 여권

\+

기계 판독식 여권

\+

2005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경우 디지털 사진

\+

2005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경우 전자여권

VWP 적용 여행자(계속):

그리스 여권

대만 여권

개인 신분증 번호

기타의 경우는 모두 다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및 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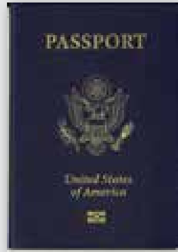
또는

임시 입국 허가서

여권 및 만료되지 않은 *EAD*

항공편 출국 시 필수 서류

미국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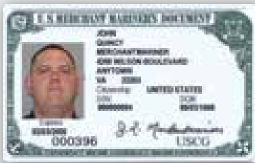
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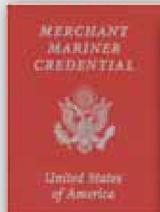


NEXUS 카드



군인
신분증
(공식 출장 명령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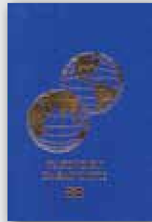
외항 선원증

합법적 영주권자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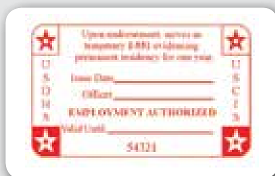

이민 비자


여권



DHS 여행 서류


임시 입국 허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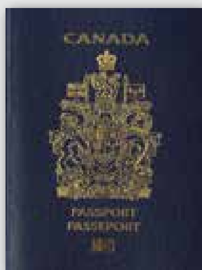
ADIT 스탬프

항공편 출국 시 필수 서류

캐나다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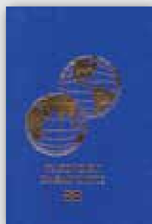


NEXUS 카드



여권

기타의 경우에는 긴급 여행 증명 또는 추방 명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권



일회 여행증



긴급 여행 증명

항공편 출국 시 필수 서류

항공편을 이용한 미국 출입국 시 **허용되지 않는 서류의 예:**

- 운전 면허증
- 출생 증명서
- 시민권 증명서(또는 카드)
- 귀화 증명서
- 영사관 증명서
- 신분증(중남미 국가)
- 국민 신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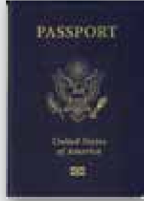
확신이 없을 경우, CBP 지역 운송회사 연락 그룹(RCLG) 또는 가장 가까운 입국항에 문의하십시오.



만료된 테슬린 비자 예

육상 및 해상 교통편 이용 시 필수 서류

미국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여권



미국 여권 카드



SENTRI 카드



NEXUS 카드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상급 운전 면허증



상급 부족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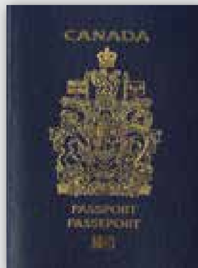


글로벌 엔트리 카드

캐나다 국민은 다음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합니다.



NEXUS 카드



여권



SENTRI 카드


원주민 북부 지역 발전 카드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상급 운전 면허증

제6부

제7부:

승객 정보 사전 확인 시스템

승객 정보 사전 확인 시스템(APIS)은 1989년 미국 정부에서 항공 업계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습니다. APIS의 의무 적용은 2001년의 항공교통 보안법(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ATSA)과 2002년의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 개혁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Reform Act)에 따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9/11 진상조사위원회의 권장사항에 따른 조치로, 국회에서는 2004년의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IRTPA)에 따라 DHS에서 항공 및 해상 교통편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접수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민항기에 적용되는 APIS 출발 전 정보 전송 및 APIS 신속 질의(AQQ)

2007년 8월 23일, CBP에서는 APIS 출발 전 최종 실행 규칙을 발표하여 180일간의 시행 기간을 두고 2008년 2월 19일부터 발효시켰습니다. 이 규칙은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며, 민항기가 세 가지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송

항공사에서는 출발 전 APIS 정보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출발 30분 전에 항공사에서 모든 탑승객 명단을 전송해야 하는 대화식 또는 비대화식 형태의 APIS 일괄 전송 방식.
- 항공사에서 각 탑승객이 탑승 전 체크인할 때마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APIS 신속 질의(AQQ) 모드.
- 두 방법 모두 항공사는 탑승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시 탑승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선박편의 경우, 탑승객 및 승무원의 도착 명단 데이터를 도착 24~96시간 전에 전송해야 하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나 선박 운송사에서는 미국에서 출발 시 60분 전에 APIS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제7부

제8부: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사라져야 합니다

인신매매는 비자발적이며, 육체적 및/또는 심리적으로 인간을 강제로 착취하는 것이며, 이는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입니다.

인신매매는 몇 가지 점에서 밀입국 알선과 다르지만 주요 차이점은 노동 착취의 여부입니다. 밀입국 알선은 자발적이며 대체로 국경을 넘은 후에는 밀입국자와 거래 관계가 종료됩니다.



운송 업계 종사자들은 승객들을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입장에 있으므로, 일반인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CBP 직원들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이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미국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CBP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피신처를 제공하며 의료지원 또는 기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연방 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
Washington, D.C. 20229

www.cbp.gov

간행물 0255-0414
Korean